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동차사고 시, 가급보험금 제도 활용해보세요!

-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가급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, 동 제도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.
 - 가급보험금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(피보험자나 교통사고 피해자 등)가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, 약관에 따라 전체 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을 말함.
- FY2008 기지급된 가급보험금은 총 373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추산 보험금(9,699억원)의 3.8%를 차지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.
 - 가급보험금의 지급건수는 6,122건으로 자동차사고 전체 건수 중 0.12%에 불과하며, 담보별로는 대인배상(73.4%), 대물배상(20.5%), 자차(3.2%), 무보험차상해(2.0%), 자손(0.9%) 순으로 나타남.
-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가급보험금 제도에 대한 안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,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꼽을 수 있음.
 - 또한 가급보험금의 재원인 지급준비금의 적립이 개별추산 방식이 아닌 전산추산 방식의 경우, 개별 건별로 정확한 지급보증금액 파악이 곤란하여 가급보험금이 과소하게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함.
-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고처리·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가급보험금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.
 -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시, 가급보험금 청구사항을 포함한 안내가 모든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행되도록 지도하는 한편, 가급보험금 청구시점에서 개별추산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임.

(자동차사고시 가급보험금 지급 실태 및 개선방안,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, 7/9)